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설명본고서

2017. 5. 17.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5.8. 서종수 의원 외 6명  
나. 회부일자 : 2017.5.8.  
다. 상정일자 :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7.5.17.)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서종수 의원

#### 가. 제안이유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·외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의원의 국내·외 여비 지급기준을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맞춰 조정함.  
(안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)

### 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초에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국내·외 숙박비 상한액(46,000원→서울특별시 70,000원, 광역시 60,000원, 그 밖의 지역은 50,000원)이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, 국외 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(의장·부의장 : 가등급 166달러→223달러, 나등급 120달러→160달러, 다등급 92달러→130달러, 라등급 79달러→85달러, 의원 : 가등급 145달러→176달러, 나등급 95달러→137달러, 다등급 70달러→106달러, 라등급 62달러→81달러)으로 조정되었음.
- 이에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근거 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여비를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 : 없음